

#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기준

2009.02.04 제정

2016.08.31 개정

2023.02.13 개정

**제1조(목적)** 이 기준은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) 제58조제1항에 근거하여 플러스자산운용주식회사(이하 “회사”)가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 간의 차별을 방지하고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범위)**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에 법, 동법 시행령, 동법 시행규칙, 금융투자업규정 및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, 그 외 관련 법규(이하 “관련법규”) 및 집합투자기구(이하 “펀드”)의 집합투자계약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**제3조(용어의 정의)** 이 기준에서 “수수료”라 함은 회사가 집합투자업, 회사가 운영하는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투자매매업 또는 중개업,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각종 보수 및 수수료로서 아래 각 호의 것을 말한다.

1. 보수: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대가로서 펀드가 부담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.
  - 가. 집합투자업자 보수: 회사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대가로서 펀드로부터 지급받는 금전 (집합투자업자 보수에는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하는 매입보수, 매각보수, 특별보수 등을 포함한다.)
  - 나. 성과보수: 회사가 펀드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미리 정하여진 산정방식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지급받는 금전
  - 다. 판매회사보수: 펀드의 판매회사 또는 회사가 집합투자증권 판매의 대가 또는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펀드로부터 지급받는 금전
  - 라. 신탁업자보수: 펀드의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 보관자로서의 대가로 펀드로부터 지급받는 금전
  - 마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: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의 계산 또는 회사운영을 대신해 준 대가로 펀드로부터 지급받는 금전
  - 바. 펀드평가회사보수: 펀드평가회사가 펀드를 평가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업무의 대가로 펀드로부터 지급받는 금전
2. 선취(판매)수수료: 펀드 판매의 대가 또는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서 펀드 매입(가입)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지불하는 금전
3. 후취(판매)수수료: 펀드 판매의 대가 또는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서 펀드 환매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지불하는 금전
4. 환매수수료: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펀드를 환매할 경우에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금전

5. 투자일임(투자자문)수수료: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일임(투자자문) 서비스의 대가로서 투자자 또는 투자일임(투자자문)재산으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하며, 그 투자일임(투자자문)재산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받는 성과수수료를 포함

**제4조(수수료 부과 기준)** ① 회사는 수수료 부과에 있어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새로운 종류형 상품의 보수 및 수수료는 기존의 다른 종류형 상품의 비용과 수익의 수준을 일관되게 고려하여 책정되어야 한다.

③ 각 수수료에 적용되는 세부적인 제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
1. 성과보수는 법 제86조, 동법시행령 제88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-65조 등에 해당하고 그 내용을 해당 투자설명서와 집합투자 규약에 기재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.

2.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는 법 제7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7조 제4항 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한다.

3. 환매수수료는 환매금액 또는 이익금 등을 기준으로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해당 투자자가 부담하며, 투자자가 부담한 환매수수료는 집합투자재산에 귀속된다.

④ 운용자산의 특성, 포트폴리오의 규모, 요구되어지는 서비스 수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책정되어야 한다.

**제5조(수수료의 부과절차)** ① 수수료 수준의 결정은 제4조의 수수료 부과 기준을 근거로 하여 회사의 내부 상품개발 절차에 따라 마케팅부서와 운용부서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고, 이에 대한 사항은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.

② 회사는 펀드의 수수료를 결정함에 있어 관련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,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③ 회사는 집합투자규약상의 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펀드와 관련된 판매회사, 신탁업자, 일반사무관리회사 등 관련회사와 협의할 수 있다.

④ 투자일임(투자자문)수수료의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서 달리 정하는 사항이 없는 한 투자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며 투자일임(투자자문)계약서에 수수료 계산방법, 수수료 계산기간 및 수수료 지급시기 등을 상세히 기술한다.

**제6조(수수료의 설명의무)** 회사는 법 제4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.

**제7조(수수료의 인상)** 회사는 이 기준에 따라 결정된 수수료의 인상을 위해 집합투자규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법 제190조제5항 본문에 다른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,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 다만,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**제8조(투자광고)** ① 회사는 투자광고(펀드에 대한 투자광고를 제외한다)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57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에 따라, 이 기준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

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회사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, 신탁업자, 판매 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가 받는 보수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 한정된 공간에서 다수의 펀드를 광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.

**제9조(공시)** 회사는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이 기준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, 법 제58조 제3항에 따라 이 기준을 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

**제10조(기타 사항)** 상기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관련 법규의 개정, 회사가 영위하는 업무 범위의 변경, 내부 업무 절차 또는 조직 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.

##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동 기준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경과조치)** 이 기준에 불구하고 회사가 운용하는 펀드에 대하여 이 기준의 시행전 결정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이 기준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본다.

##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동 기준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동 기준은 2023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.